

#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절차 안내

## □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절차 개요

- 소상공인단체 신청 → 동반성장위원회 추천(실태조사 및 의견수렴, 6개월 소요)  
→ 중소벤처기업부 장관(심의위원회 심의, 3개월 소요) 지정·고시

## □ 신청대상 업종

-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(예정) 업종 + 보호 시급 업종\*  
\*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합의·도출 신청 후 합의·도출 前 업종으로서 대기업 신규·확대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

## □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

- ① (지정 신청)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(시행령 별지2호 서식)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

### ☞ 붙임 서류 안내

-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총족 증빙 서류,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,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,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(해당 경우에만 제출)

\* 소상공인단체 기준 총족 여부는 '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 제출로 증빙 가능

\*\* 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mss.go.kr>) 회원 가입 → 증빙자료 제출 → 확인신청서 작성 → 확인서 발급

- ② (추천 요청)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(시행령 별지1호 서식)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

### ☞ 붙임 서류 안내

-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, ② 추천 요청 사유서, ③ 기타 필요자료

## □ 기타 안내사항

-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

☞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(☎ 02-368-8433, 8445)

☞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(☎ 042-481-4394, 8969)

# <참고 1>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(시행령 별지2호 서식) 작성례

## [예시]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동반성장위원회의 지정 추천일 부터 3개월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구분	[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]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합업종 만료 업종·품목 (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제1호)
	[ <input type="checkbox"/> ]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합업종 신청 중인 업종·품목 (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제2호)
	[ <input type="checkbox"/> ]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업종·품목(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제3호)

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업종·품목	업종·품목명 <b>동반성장업</b>	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<b>12345</b>
	합의(지정)기간 만료일 <b>2019.5.30</b>	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합업종 신청일

신청단체	단체명 <b>한국생계형적합업종연합회</b>	
	대표자 성명 <b>홍길동</b>	사업자등록번호 <b>111-11-11111</b>
	주소 <b>(00000)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0-00번 빌딩 101호</b>	
	실무 담당자명 <b>김만세</b>	전화번호(휴대전화) <b>02-111-1111 (010-1111-1111)</b>
	전자우편주소 <b>abc@abc.co.kr</b>	팩스번호 <b>02-111-1112</b>

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19년 3월 1일

신청단체

**한국생계형적합업종연합회**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붙임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li> <li>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</li> <li>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</li> <li>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·품목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·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·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 (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-	--	-----------

## <참고 2>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(시행령 별지1호 서식) 작성례

### [예시]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6개월
추천 요청 업종·품목명	동반성장업	
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	12345	

신청단체	단체명	한국생계형적합업종연합회	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	111-11-11111
	주소	(00000)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00-00번 빌딩 101호	
	실무 담당자명	전화번호(휴대전화)	02-111-1111 (010-1111-1111)
	전자우편주소	팩스번호	02-111-1112

추천 요청 이유	예) 동 업종은 다수의 소상공인 영위하고 있는 업종으로 아주 영세하여 대기업등으로부터 보호가 절실한 업종입니다.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------------	---

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합니다.

2019년 3월 1일

신청단체 한국생계형적합업종연합회 (서명 또는 인)

동반성장위원회 귀중

붙임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li> <li>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</li> <li>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</li> <li>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·품목의 사업을 인수·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·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·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 (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-	---	--------